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01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은 [부패방지 방침]에 따라 임직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법령 및 규정 준수
공무원등 확인 및 접촉 시 주의
뇌물(금품, 편의 등) 제공 금지
부정청탁 금지
정확하고 적법한 회계처리, 기록관리
제3자 부패 리스크 점검, 예방

02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은 우선 국내 법령 및 본사 사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의 부패방지 원칙 또는 정책과 기초를 같이 합니다. 또한 각 국가별 법령 및 규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본 가이드라인과 [부패방지 방침]의 제개정, 실제 이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임직원은 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고, 본 가이드라인과 현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현지법인 사규 간에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십시오.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은 모든 임직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및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을 비롯하여,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금지법(Bribery Act)」 등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모든 임직원은 「LG 윤리규범」, 「LG에너지솔루션 준법지침서」, 「기부규정」 등 LG에너지솔루션의 부패방지 관련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 적용되는 국내외의 법령과 당사 규정이 상충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 공무원등 확인 및 접촉 시 주의

- ✓ 본 가이드에서 “공무원등” 이라 함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 또는 「국제뇌물방지법」상의 “외국공무원등”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하여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과 그를 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공무원등과 접촉 시 부패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법사무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heck!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01 공직자등
 -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임직원
 -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 임직원
- 02 공무수행사인
- 03 공직자등의 배우자

「국제뇌물방지법」 적용 대상

- 01 외국정부 입법, 행정, 사법 업무 종사자
- 02 외국 공공기능 수행자
 - 외국정부 위임 공적 업무 수행자
 - 공공단체,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 외국정부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체의 임직원
- 공적 국제기구 업무 수행자

» 뇌물(금품, 편의 등) 제공 금지

- ✓ LG에너지솔루션은 뇌물제공행위를 금지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 약속 또는 제안하거나 제3자가 뇌물을 제공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공무원등 및 그들의 가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 단순히 금전 또는 금전에 상응하는 것뿐 아니라, 유형 또는 무형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면 어떠한 형태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선물, 주식, 상품권, 부동산, 티켓, 리베이트, 직간접적인 정치 기부금, 자선 기부, 경조금, 장학금, 식사 및 접대 비용, 여행 비용 제공, 편의 제공, 사업 기회, 취직 및 인턴십 기회, 관행적 수수료, 급행료 등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당사 규정을 위반하는 뇌물 제공 행위는 현지 관례라는 명목으로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 단,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한 적법한 자선 기부, 후원 및 협찬은 가능하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기부규정 등 내부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적법성 검토, 공개적 보고, 승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Check!

급행료 관련 유의사항

- ✓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 공무원등에게 일체의 급행료 지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급행료 지급은 대다수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급행료는 비자 발급 등 행정서류의 접수 및 처리, 제품 운송 등과 관련한 통관, 선적 및 하역, 전기, 가스 및 수도 등 공급 등과 같이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등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임직원이 급행료의 요구 등 부정한 금품 지급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떠한 지급 요청도 명백하게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반부패 정책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 단, 강압이나 위협을 동반하는 등 지급 거부가 임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 또는 임박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예외적인 합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행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준법사무국에 알리고 회계기록에 적절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Check!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

✓ 「청탁금지법」 상 부정한 목적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공직자등(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 포함)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금품등 수수 행위를 금지합니다.

- 0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02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 0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 수수
- 04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단, 공무수행사인은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	3	4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일정한 가액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경조사비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6	7	8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LG에너지솔루션은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경조사비를 제공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출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ERS에서 [공직자 대상 사외경조금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임직원들은 관련 업무 처리 시 해당 프로세스 및 관련 사내 규정을 따라야 하고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ERS - 고객지원 - Q&A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금지

- ✓ LG에너지솔루션은 부정한 청탁 행위를 금지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들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때 부정한 청탁은, 그에 수반하여 금품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지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거절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Check!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기준

청탁금지법은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행위 유형을 규정합니다.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인가허가등 직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와 감경면제	채용승진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6	7	법령위반 + 지위권한남용	8	9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비밀누설	특정인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 생산공급 재화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11	12	13	14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징병검사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정확하고 적법한 회계처리, 기록관리

- ✓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의 회계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임직원은 모든 거래와 관련된 지출 및 비용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기입, 관리하여야 합니다.
- ✓ 비용 사용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거나 그 내역을 조작하여 기록하거나, 기록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은 자금 또는 자산을 생성하거나 유지하는 것 등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불법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내부자 거래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제3자 부패리스크 점검, 예방

- ✓ 직접적인 부정청탁, 뇌물 제공 뿐만 아니라 제3자(자사의 업무를 대행, 대리 혹은 자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정청탁, 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대리인을 사용하여 그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도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거래상대방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사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나아가 당사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부패 리스크를 점검하여 계약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부패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부패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계약 포기·중단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 특히 합작투자(JV)는 장기 파트너로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수 및 합병(M&A)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과거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당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책임

- ✓ 세계 각국은 뇌물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 개인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 민사 및 관련 법령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회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임직원의 위반 행위는 당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사 및 형사, 민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에 타격을 입게 되는 등 회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문의

- ✓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나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준법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복이나 협박을 금지합니다.
- ✓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